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6. 3 선고 2020나114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해

담당변호사 이주연

피고, 피항소인 1.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형

2.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채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6. 3.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합5605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 A,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A, B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피고 E에 대한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원고 A,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E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은 D에게 인천지방법원 W,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 E이 취득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 C는 제1심에서 원고 A, B과 함께 피고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 C가 피고 E에 대한 항소만을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원고 C의 패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 F에 대한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F과 D 사이에 인천 옹진군 H 임야 682㎡에 관하여 2018. 5. 14.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F은 원고 A에게 239,5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2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각 “피고 D”을 각 “D”으로, 제4면 제10행의 “I”을 “B”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주장 요지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E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E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W, G(중복)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취득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D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B은 자매 사이로서, D이 원고 A으로부터 2018. 3. 6.자 지불각서상으로 200,000,000원, 2018. 4. 20.자로 25,000,000원, 2018. 4. 24.자로 14,500,000원 합계 239,500,000원(= 200,000,000원 + 25,000,000원 + 14,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B으로부터 2018. 3. 6.자 지불각서상으로 30,000,000원, 2018. 2. 7.자로 20,000,000원, 2018. 4. 24.자로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3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을 피고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663, 707(병합),

2019고합16(병합), 89(병합)호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2019. 9. 19. 선고된 유죄 판결에서 원고 A에 대한 편취 내역 중 2014. 10. 27.부터 2018. 2. 7.까지 피해 금액이 합계 23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에서 D에 대한 원고 A, B의 청구원금이 위 차용 금액 그대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D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39,5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이 그대로 분리·확정된 점, ② 위 D에 대한 형사 판결에 원고 A의 피해 금액으로 기재된 230,000,000원은 원고 A, B에 대한 차용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고, 이는 위 각 2018. 3. 6.자 지불각서상의 원고 A, B에 대한 차용 금액 합계 230,000,000원(=200,000,000원+30,000,000원)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위 각 2018. 3. 6.자 지불각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8. 2. 13. 이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 A, B과 D 사이의 장기간의 금전 거래를 정산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의 2018. 4. 20.자 차용금 25,000,000원, 2018. 4. 24.자 차용금 14,500,000원 및 원고 B의 2018. 4. 24.자 차용금 20,000,0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8. 2. 13. 이후에 차용된 것이고, 개별 차용금에 대하여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 E이 추가로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 A에 대한 2018. 2. 14.자 10,000,000원, 2018. 2. 28.자 20,000,000원 등은 위 주장 내용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금융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형사 판결문의 편취 내역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은 원고 A에 대하여 위 2018. 3. 6.자 지불각서상 차용금 200,000,000원 부분, 원고 B에 대하여 위 2018. 3. 6.자 지불각서상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8. 2. 7.자 차용금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30,000,000원+20,000,000원)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D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각 “피고 D”을 각 “D”으로, 제9면 제12행의 “갑 제8, 13호증, 을나 제3, 4호증”을 “갑 제5, 8, 13, 15호증, 을나 제3, 4, 5호증”으로,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9면 제14행의 “적극재산으로”를 “적극재산으로 2015년식 모하비 자동차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E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E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채무자 D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인 O와 함께 정상적으로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자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12, 1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 E의 배우자인 O는 2017. 5.경 회사 직원이었던 P로부터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4부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2017. 5. 17. 100,000,000원을 ‘P D대출’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0원을 ‘인천D투자’ 명목으로, 2017. 6. 23. 50,000,000원을 ‘인천D투자’ 명목으로, 2017. 7. 4. 50,000,000원을 ‘인천투자’ 명목으로, 2017. 8. 25. 100,000,000원을 ‘D투자’ 명목으로 P를 통하여 알게 된 X 또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 ② 이후 O는 2017. 12.경 D와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P와 X 등에게 송금한 돈 중 100,000,000원만 D에게 전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D은 O에게 자신에게 직접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월 5~8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 ③ O는 2018. 2.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100,000,000원을 D이 지정한 R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Y 투자’라고 기재하였고, 100,000,000원을 D의 남편 K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Z 투자’라고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0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AA 투자원금’이라고 기재하였다.
- ④ 한편, O는 D에게 배우자인 피고 E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 위 대여에 동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근저당권설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8. 2. 13. 채권자를 피고 E으로 하여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8. 4. 1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 E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⑤ O는 2018. 4.경까지 D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2018. 5. 23. D으로부터 “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끝내 터트렸다, 정신차리고 보니 100억의 채권자가 있더라.”는 취지의 연락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게 되자, D과 K를 피해 금액 합계 155,000,000원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는 2017. 5.경부터 P를 통하여 D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다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채업 등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위 350,00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던 점, ② O가 P이 위 돈을 D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자, D에게 직접 30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월 5~8%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O의 배우자인 피고 E은 D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를 요청하였으며, 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른 점, ③ O는 D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비교란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기재하는 한편, 대여가 아닌 ‘투자’ 명목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는 D으로부터 금전 사고가 터졌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D과 K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E은 O를 통하여 D과의 금전 거래가 매우 고율의 이자를 전제로 한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관계임을 인식하고 그 거래위험에 따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금전 사고에 관한 연락을 받자마자 곧이어 D 등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B은 2020.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06643호로 진행된 소송에서 D, AC 및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83,331,9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현재 대전지방법원 2020나10794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A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W, G(중복)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9순위가압류권자로서 채권금액 중 일부금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D의 채권자이자 D에 대한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9순위 가압류권자 AD, AE, AF, AG, AC, AH, AI 등이 채권금액 중 일부금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채권금액 합계 250,000,000원 부분 이외에 AB도 피고 E을 상대로 채권금액 83,331,949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위 가압류권자들은 위 형사 판결에 대부분 D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로서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실제로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가 예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인 원고 A, B의 채권금액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출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출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이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E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W, G(중복)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9. 9. 27.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 E이 6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이후 잔여액 66,901,672원에 대하여 9순위 가압류권자 AD, AE, AF, AG, AB, AC, AH, 인천신용보증재단, AI이 채권금액 중 각 8.3% 상당의 일부금을 배당받았으며, 그 미배당 채권금액이 위 30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 한편 원고 A, B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어 수익자인 피고 E이 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 되지만, 원고 A, B이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9순위 가압류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B은 배당을 받은 수익자인 피고 E에 대하여 배당금의 반환이나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등을 통한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배당요구권자인 위 9순위 가압류권자들의 배당요구채권을 모두 충족시키고도 남는 잉여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남는 잉여금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 B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위 배당표 중 피고 E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배당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거나, 배당표 확정 이후 배당금출급금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 전부를 계속하여 수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의 각 “피고 D”을 각 “D”으로, 제13면 제17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K, D의 각 증언”으로,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6행의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어려운 점, ③ K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 시에 D과 동행하여 그 취득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 매매계약도 K 명의로 체결된 점, ④ K는 2018. 2. 8.자로 피고 F에 대하여 작성한 약속어음 및 지불각서(을다 제4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서 피고 F에게 이를 대물변제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 A, B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이재환, 판사 임 솔

목 록

1. 인천 남동구 V 대 163.5㎡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7.45㎡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97.45㎡ 주택

 3층 97.45㎡ 주택

 지층 55.522㎡ 근린생활시설(다방)

 41.928㎡ 대피소. 끝.